
DDA 농업협상 동향

-세부원칙 2차 수정안을 중심으로

일 시 : 2008.6.25(수) 07:30

장 소 : 서울팔래스호텔

발 표 : 농림수산식품부 다자협상과장

I

최근 협상 동향 및 전망

- 팔코너(Crawford Falconer) DDA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5월 19일 세 부원칙 2차 수정안을 배포하였으며 5.26일 주간부터 제네바 차 원의 다자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
- 의장은 기존의 주요국 심층회의(Room D, 37개국 참여) 대신 **핵심이슈에 대해서 10여국 내외의 주요국을 초청하여 논의하는 소규모 고위급회의를 통해 의견 조율을 위한 타협안 모색 중**
 - 우리나라는 **관세상한, 특별품목 및 개도국긴급수입제한조치(SSM)** 소규모 고위급회의에 초청되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함
 - 일률적 관세상한 도입되지 않도록 하되, 의장문안 75항 방식을 적극 검토하면서 개도국 우대 등을 통한 실리확보 노력
 - 개도국에 대한 특별품목은 G33과 공조하여 감축면제 등 최선의 대우를 가능한 많이 확보토록 노력
- 민감품목 소비량 데이터 관련, 품목범위 리스트 관련 논의와 Data 6 그룹이 제출한 소비량 데이터 검증작업 진행중
 - 원칙적으로 품목범위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은 품목은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, 세부원칙에 민감품목 소비량 데이터를 첨부해야 함
 - * 현재 Data 6 그룹중 미국, EU, 일본, 노웨이, 스위스 등 5개국이 제출
-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7월중 농업/비농산물시장접근(NAMA)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**각료회의 개최 가능성 있음**

- 각료회의에서 농업/NAMA 세부원칙이 타결될 경우 '08년내 DDA 협상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미국 대선 등 주요회원국의 정치일정으로 인하여 연내종결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음

* 비농산물시장접근(NAMA)협상은 선·개도국 관세감축수준과 개도국 우대조치 등 주요이슈에 대한 선·개도국간 입장차가 매우 큰 상태이며 미국 주도의 주요국 비공식협약에서 타협안을 시도하고 있음

II 분야별 논의동향 - 세부원칙 2차 수정안 중심으로

1. 세부원칙 2차 수정안에 대한 평가

- 보조금 감축률, 민감품목 개수 및 TRQ 증량수준, 특별품목 개수 등 '08.2월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, 민감품목 소비량 계산방식 등 일부 기술적 사항의 진전내용을 반영
- 잔여쟁점수가 각료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줄어들었다는 평가
 - 쟁점이 담긴 [] 숫자 : 2월 의장문안 170여개 → 5월 문안 30여개
-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온 직접적인 관세상한 배제, 민감품목의 세번별 지정방식(partial designation), 일부 특별품목의 관세감축 면제 인정, AMS의 블루박스 전환시 신축성 등은 유지됨
- 핵심 관심사항인 관세상한 대안 및 민감품목 등에 있어 개도국 우대규정(S&D) 도입을 명확히 한 점 등은 2월 수정안보다 개선되어 긍정적이며 동 규정 활용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나, 여전히 부담은 있을 것으로 예상

2. 분야별 주요내용 및 검토

시장접근분야

가. 관세감축률

□ 2차 수정안 주요내용

- 관세감축률은 최상위구간(4구간)을 제외하고는 중간수치를 제시
- 이행기간은 선진국 5년, 개도국 8년(기존 수정안과 동일)

	선진국			개도국(선진국의 2/3)		
	구간경계	기존	수정안	구간경계	기존	수정안
1구간	0~20%	48~52%	50%	0~30%	32~35%	33.3%
2구간	20~50%	55~60%	57%	30~80%	37~40%	38.0%
3구간	50~75%	62~65%	64%	80~130%	41~43%	42.7%
4구간	75%이상	66~73%	66-73%	130%이상	44~49%	44-49%

- 선진국은 최소 평균감축률 [54]%를 적용(단, 민감품목과 경사관세 및 열대작물도 포함)하여 동 감축률 이하일 때 추가 감축
- 개도국은 최대 평균감축률 [36]%를 적용(단, 민감품목 포함)하여 동 감축률 이하일 경우 구간별 감축률 하향 조정

□ 검토의견

- 선진국 최소 평균감축률 이행의무는 유지하였으나 감축률 계산시 열대작물 및 경사관세도 포함토록 하여 부담을 다소 완화
- 개도국 최대 평균감축률 규정을 유지하였으나 감축률 계산시 민감품목 감축률을 포함토록 함에 따라 일부 혜택 감소

나. 민감품목

□ 2차 수정안 주요내용

- 민감품목 개수는 전체 세번(무세세번 제외 문구 삭제)의 4-6%(개도국은 5.3-8%)로 기존 수정안과 수치가 동일
- TRQ 증량수준은 deviation에 따라 소비량의 3~6% 수준으로 기존 수정안과 동일하나, 개도국에 대해서는 TRQ 증량 의 이행기간 조정 등 대안을 추가하여 선택 가능토록 규정
 - (1안) 일반 감축률을 적용하되 이행기간 3년 연장
 - (2안) 일반 감축률의 3/4를 적용하되 TRQ 증량 없이 이행기간 2년 단축(단, 민감품목 수의 2/3에 한해서 적용 가능)

< 관세감축이탈수준에 따른 TRQ 증량물량(소비량대비 %) >

조 건		선진국	개도국
Deviation 1/3 적용시(구간별 감축률의 2/3수준 적용)		[3] [5]	[2] [3.3]
감축	단, 현행 TRQ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10%이상일 경우	[2.5] [4.5]	[1.7] [3.0]
조정	단, 현행 TRQ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30%이상일 경우	[2] [4]	[1.3] [2.7]
Deviation 1/2 적용시(구간별 감축률의 1/2수준 적용)		[3.5] [5.5]	[2.3] [3.7]
감축	현행 TRQ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10%이상일 경우	[3] [5]	[2] [3.3]
조정	현행 TRQ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30%이상일 경우	[2.5] [4.5]	[1.7] [3.0]
Deviation 2/3 적용시(구간별 감축률의 1/3수준 적용)		[4] [6]	[2.7] [4]
감축	현행 TRQ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10%이상일 경우	[3.5] [5.5]	[2.3] [3.7]
조정	현행 TRQ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30%이상일 경우	[3] [5]	[2.0] [3.3]

- TRQ증량 이행기간은 이행첫날 총 증량분의 1/3만큼 증량하고 매 12개월마다 1/3씩 추가 증량토록 규정
- TRQ 증량의 기준이 되는 소비량 산출방식(Annex C) 관련, 품목단위 및 세번단위 산출방식을 모두 열거하면서 세번단위 산출방식은 최근 주요국 논의내용을 첨부

※ (Annex C) TRQ 물량 계산방식

1) 품목 단위 소비량 기준 TRQ 증량

- 품목 범위내 일부 세번만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더라도 품목 전체 소비량을 기준으로 TRQ 증량 산정

2) 세번 단위 소비량 기준 TRQ 증량

- 품목 범위내 일부 세번만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Attachment Ai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세번별 소비량 산출
- 이를 통해 산출된 품목 전체 TRQ 물량이 품목 전체 소비량의 1-3% 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를 최소 TRQ로 설정
- 회원국은 품목별 소비량 계산결과를 제출하여 모델리티에 첨부하여야 하며 소비량이 첨부된 품목만 민감품목으로 지정 가능
- TRQ 양허 방식은 품목별 단일 쿼터(single tariff quota) 로 운영 or Attachment에 따른 sub-allocation 적용

□ 검토의견

- 민감품목 개수 수치는 4-6%로 동일하나, 무세세번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세번수의 실질적 증가효과

※ 민감품목 세번수는 선진국 기준시 58-87개, 개도국 기준시 77-116개로 예상

- 민감품목 TRQ 증량 관련, 감축조정 수준은 다소 불리해 졌으나 deviation 2/3 적용시에도 감축조정을 인정한 점은 긍정적

※ 현 TRQ가 소비량의 10% 이상일 경우 : (기존) 2.5-4% → (변경) 2.5-5%

현 TRQ가 소비량의 30% 이상일 경우 : (기존) 2-3.5% → (변경) 2-4.5%

< TRQ 증량수준 추정치(소비량대비 %) >

조정 요건	증가율	해 당 품 목
조정 해당없음	3-6%	인삼, 참깨·참기름, 대추, 잣, 녹차, 생강, 마늘, 보리, 감자, 고추, 에틸알콜, 천연꿀, 밤, 분유, 감귤, 양파, 연유, 버터, (쌀) 등
현TRQ ≥ 소비량의 10%	2.5-5%	메밀, 맥주맥, 고구마전분 등
현TRQ ≥ 소비량의 30%	2-4.5%	매니옥, 녹두·팥, 기타서류, 땅콩, 맥아 등

* 단, 개도국 기준 적용시 동 증가율의 2/3수준 적용

다. 관세상한

□ 2차 수정안 주요내용

- 명시적인 관세상한은 도입되지 않았으나, 고관세 품목 유지에 대한 쿼터 제공 보상방안은 2월 수정안의 기본골격을 유지
 - 감축후 관세가 100%를 초과하는 세번수가 4%를 초과할 경우는 전체 민감품목에 대해 TRQ를 0.5% 만큼 추가 증량
 - 동조항을 적용하는 개도국(in a position to do, and wishing to avail in itself of this provision)에 대해 우대내용을 추가
- ※ 개도국은 150% 초과 세번수가 5.3%를 초과할 경우 [0.33]% 추가증량

□ 검토의견

- 세번의 4% 계산시 전체 세번에서 무세를 제외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전체 세번으로 수정하여 일부 부담을 완화
- 우리의 경우 감축후 100% 및 150%이상 세번수는 각각 7.3-8.4% 및 7.2-8.3%로 예상되는바, 동 조항에 따른 TRQ 증량 부담 전망
- 우리가 적극 제기한 개도국 우대 규정이 새로이 도입되어 부담이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나, 관세상한 대상에서 SP 제외하는 문제는 반영되지 않음

□ 추가 논의 동향

- 소규모 고위급회의에서 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을 분리하여 비민감품목 일부에 대해서도 관세상한 적용을 유예하되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

라. 특별품목(SP : Special Products)

□ 2차 수정안 주요내용

- 개도국은 세번의 [최대 20% 최소] 8%를 특별품목으로 지정가능
 - 최소 세번 개념 도입시 8% 이하 세번에 대해서는 지표* 적용 면제
 - * 열량공급도, 자급률, 생산액 비중, 소규모 농가 생산비중, 고용비중 등
 - 민감품목 TRQ 증량외의 옵션을 이용하지 않은 국가에 한해 非사용 민감품목의 SP전환 인정(단, 민감품목 개수의 1/3을 한도로 하고 감축률은 20%를 적용)
- 관세감축은 2개 범주로 나누어 1그룹(SP의 [40][no]%)은 관세감축을 면제하고 2그룹(나머지 SP)은 평균 15%(최소 12%, 최대20%)의 감축률을 적용

구분	SP 품목중	대우(감축율)
1	[40][no] %	[0]%
2	[60] %	평균 15%, 최소 12%, 최대 20%

□ 검토의견

- 미국 등이 제안한 negative indicator*가 도입되지 않은 점은 긍정적이나 SP 지정 및 대우가 2월 세부원칙안에 비해 전반적으로 엄격해진 것으로 평가
 - *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 등은 최소감축률을 적용하는 SP로의 지정을 제한하는 것
 - SP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(20%) 및 최소(8%) 세번의 골격은 유지하였으나, 이를 bracket으로 처리하여 SP의 전체 개수가 8%로 제한될 가능성을 시사

- 평균 감축방식의 도입은 신축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평균감축률(15%)은 2월 수정안과 동일
* 2월 세부원칙안의 SP 관세감축수준은 [8][15]% 및 [12][25]%

□ 추가 논의 동향

- 2-tier 구조를 기초로 관세감축면제(zero cut)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논의 중

마. SSG(긴급수입관세)

□ 2차 수정안 주요내용

- 선진국의 경우, SSG를 모두 철폐하거나 전체 세번의 1.5%로 축소하는 방안을 병렬적으로 제시
- 개도국의 경우, 발동기준 및 구체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되, 적용 품목을 전체 세번의 3%로 축소하는 방안을 []로 규정
- 세부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농업협정문 5조를 적절히 수정

□ 검토의견

- 우리의 경우 실제 발동 세번수를 기준으로 볼 때 개도국 3% 적용시 여유가 있는 점은 긍정적 평가
※ UR협상 결과로 양허표에 120개 세번을 지정하였으나, 실제 SSG 발동실적이 있는 세번은 27개 (전체 세번의 1.9%) 수준
- 한편 1차 수정안에서는 SSG 폐지시 이행기간을 이행첫날로 명시하였으나 2차 수정안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았는바, SSG 폐지 및 축소시기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

바. 개도국 SSM(긴급수입관세) * SSM: Special Safeguard Mechanism

□ 2차 수정안 주요내용

- 개도국은 수입량이 일정물량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

		발동기준	구제조치(추가관세 : 실행관세에 부과)
물량 기준 SSM	1안 (G33)	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05%초과 110%이하	양허관세의 50% 또는 40%p 중 높은 것
		110%초과 130%이하	양허관세의 75% 또는 50%p 중 높은 것
		130%초과	양허관세의 100% 또는 60%p 중 높은 것
	2안 (수출국)	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30%초과 135%이하	양허관세의 20% 또는 20%p 중 낮은 것 한도 : DDA 양허관세
		135%초과 155%이하	양허관세의 25% 또는 25%p 중 낮은 것 한도: UR 양허관세와 DDA 양허관세의 중간
		155% 초과	양허관세의 30% 또는 30%p 중 낮은 것 한도 : UR 양허관세
가격기준 SSM	최근 3개년 평균가격의 [70]% 이하로 하락시	발동가격과 수입가격 차이[의 50%] [한도: UR 양허관세]	

* 가격기준 SSM의 경우 당해연도 수입물량이 분명히 감소하고 있거나 수입량이 경미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동불가

- 물량기준 SSM은 최대 12개월(계절성 품목은 최대6개월)까지 발동하되 어떤 품목도 2회 초과하여 연속발동은 불가
- 12개월 동안 [3-8]품목*까지만 발동할 수 있으며 물량기준 SSM과 가격기준 SSM의 동시발동 또는 SSG 등 다른 긴급수입제한 조치와 동시 발동은 불가

* HS 6단위 1개를 1개 품목으로 정의하고 1개 품목당 세번은 최대[4-8개]

□ 검토의견

- SSM의 쟁점인 발동기준과 구제조치는 G-33 제안과 수출국 제안을 나누어 기술하여 양자 택일하는 구조로 단순화
- 12개월간 발동대상 품목 수 및 구체적인 적용방식 등은 SSM의 발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인 것으로 평가됨

□ 추가 논의 동향

- 구제조치 후의 관세수준이 UR 양허세율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 진행

사. TRQ 관리방안

□ 2차 수정안 주요내용

- 쿼터관리는 수입허가절차협정상의 수입허가의 예로 보아 동 협정을 전적으로 적용하고, 아래의 추가적 규정들도 적용

<p>절차 간소화 규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관련 정보 공표는 최소한 쿼터 개시 90일 전까지(현규정 21 일) ▪ 쿼터 신청주관기관을 1개로 제한 ▪ 신청 처리기간은 선착순 배분의 경우(“as and when received” case)는 30일, 모든 신청서를 동시에 검토할 경우(“simultaneous” consideration case)는 60일 이내로 한정 ▪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수량에 대한 수입허가를 하도록 규정
<p>쿼터 소진 규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TRQ 소진율은 공개되어야 하며, 수입국은 행정적 절차부담으로 쿼터 미소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장해야함 ▪ 수입권(licences)을 부여받은 영업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, 수입국은 미사용 사유를 조사하여 새로운 수입권 배정을 고려 ▪ 쿼터 미소진에 대한 합리적 경제적 이유가 없는 경우, 수입국은 영업자에게 미사용 쿼터를 다른자에게 이양하도록 조치

○ 수입국은 부속서 E에 따라 「쿼터 미소진 메커니즘」 제공

시기	해당 조치						
(1단계) 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모니터링 첫해, 수입국이 소진율을 통보하지 않았거나 소진율이 지정된 비율(X%)이하로 하락시, 수출국은 TRQ 실행과 관련하여 농업위원회에 문제제기 가능(메커니즘 발동) ▪ 수입국은 시장상황, TRQ관리방식, 미소진 야기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수출국들을 이해시켜야 함 						
(2단계) 2년 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메커니즘 발동이후, 연속 2년동안 지정된 비율이하로 소진율이 하락하거나 어떠한 통보도 없었다면, TRQ관리방식 수정 요구 가능 ▪ 수입국들은 요구된 특별한 조치를 취하거나, 소진율을 향상시킬 효율적인 다른 조치 필요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70%;">매커니즘 발동이후 상황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결 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i) 소진율이 지정된 비율(X%)이상으로 상승시 ii) 낮은 소진율이 시장상황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시</td> <td>‘해결된’ 것으로 보아 모니터링 불필요</td> </tr> <tr> <td>i) 소진율이 지정된 비율(X%) 이하로 유지</td> <td>수입관리 방식에 대한 추가 수정 요구 가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매커니즘 발동이후 상황	결 과	i) 소진율이 지정된 비율(X%)이상으로 상승시 ii) 낮은 소진율이 시장상황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시	‘해결된’ 것으로 보아 모니터링 불필요	i) 소진율이 지정된 비율(X%) 이하로 유지	수입관리 방식에 대한 추가 수정 요구 가능
매커니즘 발동이후 상황	결 과						
i) 소진율이 지정된 비율(X%)이상으로 상승시 ii) 낮은 소진율이 시장상황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시	‘해결된’ 것으로 보아 모니터링 불필요						
i) 소진율이 지정된 비율(X%) 이하로 유지	수입관리 방식에 대한 추가 수정 요구 가능						
(3단계) 3년 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모니터링 세 번째해 이후, 아래의 경우 수입국들은 선착순과 비조건적 허가 중 하나로 수입관리방식 변경(최소 2년간 유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a) 연속 3년간 소진율이 x% 이하로 유지 (b) 소진율이 직전 3년동안의 소진율보다 지정된 최소물량 비율 (Y%p)만큼 증가하지 않을 경우 (c) 미소진 사유에 대한 논의가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경우 (d) 수출국이 미소진 메커니즘의 3단계를 시작할 것을 희망시 						

□ 검토의견

- 1차 수정안과 비교시 절차적 측면 규정은 변동 없으며, 쿼터 미소진과 관련하여 수입국들의 의무를 일부 완화
 - 수입국이 미소진 사유에 대해 수출국들을 이해시킬 경우 미소진 쿼터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내용(automaticity)을 명시적으로 규정

□ 추가 논의 동향

- 주요 수입국 그룹(G-10)과 수출국 그룹을 중심으로 쿼터 미소진 매카니즘 발동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진율(X,Y)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

아. In-quota 세율

□ 2차 수정안 주요내용

- 쿼터 내 관세 감축과 관련한 2개의 옵션을 병렬적으로 제시

1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비민감품목: 쿼터 밖 관세 해당 구간감축률을 적용 ▪ 민감품목 또는 현행 비TRQ품목: 최상위구간부터 차례로 쿼터밖 관세 해당 구간감축률보다 10/7.5/5/2.5%p 만큼 작게 감축 ※ 개도국은 13.3/10/6.6/3.3%p 만큼 작게 감축 ▪ 단, 선진국의 경우 10% 이하의 쿼터 내 관세는 철폐
2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선진국: (쿼터 내 세율이 5% 초과인 경우) 철폐 (쿼터 내 세율이 5% 이상인 경우) 5%로 감축과 쿼터 밖 세율 해당 구간감축률 중 감축률이 더 큰 것을 적용. ▪ 개도국: (TRQ 증량하는 경우) 102, 101항 적용(이행기간 2년 더 인정) (TRQ 증량 외 대안 사용시) 쿼터 밖 세율 감축률의 1/3 적용

□ 검토의견

- 구간감축율의 기준이 쿼터 밖 세율임을 명시하고 있는바, 쿼터 내 세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감축률이 높아짐
- 1안 적용시 현재 관세수준이 10%이상인 품목은 구간감축률 이상으로 감축되지 않아 고관세 품목 보호가 가능한데 반해, 2안 적용시 모든 쿼터 내 관세가 5%이하로 감축됨

카. 경사관세

□ 2차 수정안 주요내용

- 리스트에 곡물류(밀, 보리, 귀리, 옥수수, 쌀, 수수)와 카카오 추가
- 가공품의 관세감축(최상위구간 외)은 차상위구간 감축률을 적용하고 최상위구간 품목의 경우는 구간감축률에 6%p를 추가하여 적용
 - 감축후 원료품과 가공품의 관세차가 5%p이내인 경우 적용 면제
 - 경사관세 적용후 가공품 관세가 원료품보다 작지 않도록 조정
- 선진국과 능력이 있음을 선언한 개도국에 적용
- 민감품목은 경사관세 적용 배제. 열대작물의 감축수준이 경사관세 감축 수준보다 큰 경우 열대작물의 관세감축률을 적용

□ 검토의견

- 경사관세 리스트 관련, 기존의 22개 원료농산물 목록이 확대되어 쌀을 포함한 6개의 곡물류 및 카카오가 신규 포함
 - 쌀의 경우는 벼만 원료농산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도정한 쌀, 밀가루 등 단순가공한 품목도 가공품에 포함되어 있음
- 우리의 경우 총 4개 품목(HS 10단위 기준 12개)이 경사관세 에 해당되며, 신규 추가 품목의 경우는 밀이 해당
- 다만 능력있는 개도국으로 '선언한'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여 개도국에 대한 의무수준을 다소 약화

차. 관세단순화

□ 2차 수정안 주요내용

- 현재의 양허 내용보다 복잡한 형태의 양허는 불가
- [모든 세번은 단순 종가세로 양허해야 하며, 이때 전환방식은 AVEs 전환방식(TN/AG/W/3의 Annex A)을 이용]
- 고도의 복합세(complex matrix tariffs)는 종량세 또는 종가세로 전환
- 개도국은 2년의 추가 이행기간 부여, LDC는 단순화 의무 면제

□ 검토의견

- 관세단순화 목표수준관련 문안 전체를 괄호에 담아 둔 점은 종전 2월 수정안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
 - 다만, 모든 세번의 단순화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
- '08.2월 수정안에서는 복합세 및 혼합세에 대해서 종량세 또는 종가세로 전환하도록 규정하였으나, 이번 문서에서는 복합세 및 혼합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긍정적 평가
- 우리의 경우 혼합세 76개 세번(5.2%)이 있는바, 일부 품목의 경우 단순 종가세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염두에 두고 대응

국내보조분야

가. 무역왜곡보조총액(OTDS)*

* OTDS(Overall Trade Distorting Domestic Support) = AMS+De minimis+Blue Box

□ 2차 수정안 주요내용

- 무역왜곡보조총액(OTDS)는 AMS, Blue box, De minimis의 합계로 각각의 개별 보조금 한도를 감축하면서 총액도 동시에 감축토록 규정
- OTDS 수준에 따라 감축구간 및 감축률, 이행기간 차등 적용

구 간	OTDS규모 (억달러)	OTDS 감축율	이행기간	개도국
1구간(EU)	600 초과	[(75)(85)] %	첫날 33.3% 감축,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	- 선진국의 2/3, [33.3] [40] %
2구간(미국, 일본)	600~100	[(66)(73)] %		
3구간(기타 국가)	100억 미만	[(50)(60)] %	첫날 25% 감축,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	- 첫날 20% 감축, 나머지는 8년 균등 감축

- OTDS를 사용하는 모든 회원국은 생산액 data를 세부원칙에 첨부

나. 감축대상보조(AMS)

□ 2차 수정안 주요내용

- 최종 양허된 AMS 규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뉘어 감축

구간	AMS규모 (억달러)	AMS 감축율	이행기간	개도국
1구간(EU)	400 초과	70%	첫날 25% 감축,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	-30%(선진국의 2/3) -첫날 3.3% 감축, 나머지는 8년동안 균등 감축
2구간(미국, 일본)	400~150	60%		
3구간(기타 국가)	150억 미만	45%	첫날 7.5% 감축,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	

※ AMS 한도가 '95-'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40%이상인 선진국의 경우, 2구간 국가는 1,2구간 감축율 차이만큼, 3구간 국가는 2,3구간의 감축율 차이의 1/2만큼 추가감축 노력

- 개도국의 경우, 고정외부참조가격에 비하여 식품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AMS 한도 초과할 수 있는 상황 고려한다는 규정 도입
- 미국은 제외한 선진국은 '95~'00년 동안의 통보된 품목특정 AMS 평균 지급실적을 한도로 설정
 - 미국은 '95~'00년 동안 품목별로 지원한 금액을 비율로 환산하여 이를 ['95~'04년] 전체 지원액에 적용
- 기준기간 이후 de minimis 수준 이상으로 품목특정 AMS 지급실적이 있는 경우, 통보된 최근 2년 동안의 평균 품목특정 AMS지급실적을 한도로 설정
- 기준기간 동안 de minimis수준 이하로 지원한 품목은 UR협상결과 de minimis수준이 품목특정 AMS한도가 됨
- 개도국은 옵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품목별 AMS 한도를 양허
 - (a) '95~'00년 혹은 '95~'04년 평균 통보된 AMS 지급액
 - (b) '95~'00년 혹은 '95~'04년 평균생산액의 20%
 - (c) 해당년도(in the relevant year) 총 AMS의 20%
- 품목특정 AMS 한도는 이행 첫날부터 적용

□ 검토의견

- 감축구간, 감축율 및 이행기간 등 주요 내용은 기존 문서와 동일
 - 다만, 선진국의 경우 품목특정 AMS 한도를 생산액 data를 세부원칙에 첨부하도록 규정
- 우리의 경우 AMS지급실적 중 쌀에 대한 보조금이 대부분('04년의 경우 92%)을 차지하는 상황이나 '05년부터 양정제도가 개편, 쌀 수매제가 폐지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에 따라 AMS한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

다. 최소허용보조(De Minimis)

□ 2차 수정안 주요내용

- 선진국은 최소허용보조수준*을 [(50)(60)] % 이상 감축
 - [이행 첫날부터] , [5년 동안 균등] 감축 이행
 - * 품목특정DM은 해당품목 생산액의 5% +품목불특정DM은 농업총생산액의 5%
- 개도국은 최소허용보조수준*을 [33.3/40] % 이상 감축
 - 선진국보다 3년 더 긴 이행기간 부여
 - * 품목특정DM은 해당품목 생산액의 10% +품목불특정DM은 농업총생산액의 10%

□ 검토의견

- 우리는 최소허용보조의 지급실적이 미미(품목특정: 0.65%, 품목불특정: 1.3%)하여 감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
 - 다만, 최근 보조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**마늘(1.95%), 양파(2.17%), 당근(2.44%), 배(1.97%)** 등의 경우는 선진국기준(이행말 지급한도: 평균생산액의 2%) 적용시 일정수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

라. 블루박스

□ 2차 수정안 주요내용

- 이행계획서에 생산제약하의 직접지불(Old BB)과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직접지불(New BB)의 적용여부를 명시하되, 한 품목에 두가지 형태의 블루박스 모두 적용할 수 없음
 - 다만 현행 AMS를 BB로 전환하거나 BB 및 AMS 미지급 품목에 대해 BB를 도입할 때는 두 가지 형태 모두 적용이 가능하되, 양허 후에는 변경 불가

○ **블루박스 전체 한도**

- 선진국은 '95~'00년 평균농업총생산액의 **2.5%**, 개도국은 '95~'00년 혹은 '95~'04년 평균농업총생산액의 **5%**를 한도로 설정하여 이행 첫날부터 적용

** '95~'00년 동안 OTDS의 40%이상을 BB로 사용한 국가는 기준기간동안의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AMS 감축율 적용 감축(이행기간 2년)

○ **미국을 제외한 회원국은 '95~'00년 Old BB의 평균지급액을 품목별 BB 한도로 하고 이를 세부원칙에 첨부토록 규정**

- 기준기간동안 **BB와 AMS 지원실적이 없는 품목들은 블루박스 전체 한도의 5% 내에서 블루박스 지원 가능** (단, 품목별 지원 상한액은 블루박스 한도의 2.5%)

* 개도국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BB한도의 25% 범위 내에서 개별품목별로 BB 한도의 7.5%를 상한으로 설정

○ **품목특정 AMS를 BB로 전환시 품목별 BB 지급한도는 초과 가능(전체 BB한도는 유지)하나, 전환된 만큼 품목특정 AMS 감축**

□ **검토의견**

-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를 세부원칙에 첨부토록 한 것이 특징
- 전체 또는 품목 특정 상한을 넘을 경우 전체 보조금을 AMS에 산입해야 한다는 조항 삭제함으로써 블루박스의 신축성이 확대됨
- 기준기간 동안 블루박스과 AMS 지원실적이 없는 품목에 대한 개도국의 지원 가능 한도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

라. 허용보조(Green Box)

□ 2차 수정안 주요 내용

○ 직접지불과 관련하여 요건을 강화

- 직불제의 수혜자격을 정하는 기준년도를 고정하고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 이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바, 이 경우 변경요건으로 예산 유지 및 감축 내용이 다시 포함

※ 1차 수정안에는 기존의 예산유지 요건이 삭제되고 '상당히 긴 기간'의 요건만 규정되어 있었음

□ 검토의견

- 2월수정안에서 삭제되었던 기준기간 업데이트시 예산 유지 및 감축의무 부분이 다시 포함되어 향후 관련 사업 설계시 부담

세부원칙 수정안과 2차 수정안 주요내용

쟁 점		세부원칙 수정안('08.2)	세부원칙 2차 수정안('08.5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장접근	관세감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간경계 및 감축률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 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구간경계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감축률(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75% 초과</td> <td>66-73</td> </tr> <tr> <td>50% ~ 75%</td> <td>62-65</td> </tr> <tr> <td>20% ~ 50%</td> <td>55-60</td> </tr> <tr> <td>20%이하</td> <td>48-5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○ 이행기간: 선진국 5년, 개도국 8년 ○ 선진국 최소 평균 감축률 54%, 개도국 최대 평균 감축률 36% 	구간경계	감축률(%)	75% 초과	66-73	50% ~ 75%	62-65	20% ~ 50%	55-60	20%이하	48-5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상위의 구간 감축률 단일수치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 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구간경계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감축률(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75% 초과</td> <td>66-73</td> </tr> <tr> <td>50% ~ 75%</td> <td>64</td> </tr> <tr> <td>20% ~ 50%</td> <td>57</td> </tr> <tr> <td>20%이하</td> <td>5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○ 이행기간 및 평균 감축률은 유지 	구간경계	감축률(%)	75% 초과	66-73	50% ~ 75%	64	20% ~ 50%	57	20%이하	50										
	구간경계	감축률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75% 초과	66-7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0% ~ 75%	62-6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% ~ 50%	55-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%이하	48-5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간경계	감축률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5% 초과	66-7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0% ~ 75%	6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% ~ 50%	5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%이하	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세상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세상한의 명시적 언급 없음 ○ 관세감축 후 관세가 100% 이상 세번수가 4%가 넘는 경우 민감품목의 TRQ []% 추가 증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진국은 100% 및 4% 동일, 추가증량수준 0.5%로 제시 ○ 능력있는 개도국의 경우 150% 및 5.3% 적용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민감품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수: 선진국 4 or 6% ○ TRQ증량: 소비량의 3-6% * 개도국은 개수 1/3 추가, TRQ 2/3수준 인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수 및 TRQ 증량수준 동일 ○ 개도국의 경우는 TRQ 증량의 다른 대안을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간감축율 적용하되 3년 연장 - 구간감축율의 3/4 적용하되 2년 단축(단 민감품목 수의 2/3 로 한정) ○ 소비량 계산방식 논의내용 반영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특별품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수: 최소 8%, 최대 12-20% ○ 감축률: (6%)8-15%, (6%)12-25% * 단, 관세감축 면제가능성도 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수: [최소] 8%, [최대 20%] ○ SP의 [40%] [no] 감축면제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나머지는 평균 15%, 최소 12%, 최대 20% 감축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내보조	무역예곡 보조총액 (OTDS) 감축대상보조 (AMS)	○ 보조금 감축률	○ 변동없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0%;">국가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OTDS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AMS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EU</td> <td>[75][85]</td> <td>70%</td> </tr> <tr> <td>미국·일본</td> <td>[66][73]</td> <td>60%</td> </tr> <tr> <td>기타국가</td> <td>[50][60]</td> <td>45%</td> </tr> <tr> <td>개도국</td> <td>[33.3][40]</td> <td>3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국가	OTDS	AMS	EU	[75][85]	70%	미국·일본	[66][73]	60%	기타국가	[50][60]	45%	개도국	[33.3][40]	30%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0%;">국가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OTDS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AMS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EU</td> <td>[75][85]</td> <td>70%</td> </tr> <tr> <td>미국·일본</td> <td>[66][73]</td> <td>60%</td> </tr> <tr> <td>기타국가</td> <td>[50][60]</td> <td>45%</td> </tr> <tr> <td>개도국</td> <td>[33.3][40]</td> <td>3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국가	OTDS	AMS	EU	[75][85]	70%	미국·일본	[66][73]	60%	기타국가	[50][60]	45%	개도국	[33.3][40]	30%
		국가	OTDS	AMS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EU	[75][85]	7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미국·일본	[66][73]	6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국가	[50][60]	4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개도국	[33.3][40]	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가	OTDS	AMS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EU	[75][85]	7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미국·일본	[66][73]	6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국가	[50][60]	4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개도국	[33.3][40]	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